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유의동의원 대표발의)

법률 제 호

의 안 번 호	3022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0. 28.  
발 의 자 : 유의동 · 김용태 · 성일종  
송희경 · 염동열 · 원유철  
김태흠 · 김선동 · 김재경  
홍철호 · 홍일표 의원  
(11인)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
특별법 부칙 제2항 중 “2018년”을 “2025년”으로 한다.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(YRP) 및 연합토지관리계  
획(LPP)을 합의하고 현행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 
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여,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  
의 약 70%를 평택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주한미군 및  
가족이 현재 약 1만2천명에서 약 6만여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  
망하고 있으나 최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이주 여건을 충족시키지  
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 
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까지를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여,  
향후 이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 
확보하려는 것임(안 부칙 제2항)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18년 1</u> 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.</p>	<p>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②(유효기간) -----<u>2025년--</u> ----- --.</p>